

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에 접속해보세요!



<http://www.me.go.kr/mamobus>
수도권대기환경청



<http://mamobus.kr>
푸르미의 생생 바람개비 블로그

푸른하늘 21
수도권 대기환경청



2014년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안내



01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?

○ 배출가스 저감사업

-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, 엔진 개조, 조기 폐차에 소요 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

사업구분	내 용
1. 저감장치 부착	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(DPF, p-DPF)를 부착
2. 엔진 개조	기존 자동차 엔진을 저공해 LPG엔진으로 개조
3. 조기폐차	차령 7년 이상의 노후경유자동차 등 정해진 조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, 폐차시 비용 지원

※ 단, 중복지원 불가(차량 1대당 1개 사업에 대해서만 비용 지원)

은행차 배출가스
저감사업에 참여하고
푸른하늘 함께해요!



02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

○ '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' 보조금 지원 대상

- 대기관리권역에 등록, 배출가스 보증기간*이 경과된 경유자동차(이하 '특정경유자동차')로 배출가스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
 - ※ 배출가스 보증기간 : 차량 총중량 3.5톤 미만 5년, 차량 총중량 3.5톤 이상 2년
- 저공해 조치의무 대상 차량
 - '05.12.31 이전 등록 자동차로 차량 총 중량이 2.5톤 이상이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시 · 군으로부터 저공해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
 - ※ 벌칙조항 :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항)

○ '조기폐차' 보조금 지원 대상

- 아래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
 - 차량 7년 이상의 특정경유자동차 -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
 -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-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
 -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 한 적이 없는 자동차
 - ※ 단,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 후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보조금을 전액 반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
 - '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(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)'상 정상가동 판정

대기관리권역

- 서울특별시(전지역)
- 인천광역시(옹진군 제외 단, 영흥면 포함)
- 경기도(광주시, 안성시, 양평군, 여주군, 포천시, 가평군, 연천군 제외)

공해차량제한지역(Low Emission Zone) 운행제한

- 저공해 조치 미이행 자동차에 대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차량운행을 제한
 - 최초 1회 위반 시 위반사실 통지 - 2회 이상 시 위반 시마다 20만원 과태료 부과(최대 200만원)
 - ※ 예외 :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 매년 농도가 10%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를 관할 지자체장이 유예(1년, 1회 연장가능)한 경우
근거 :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(시 · 도별 조례)

03 저감사업 참여 시 지원금액 및 혜택

○ 저감사업 지원금액

-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에 최대 771만원 지원

(단위 : 만원)

구 분	저감장치 부착(클리닝 등 유지관리비 포함)		엔진개조
	DPF	p-DPF	
일반	378~732	180~258	343~353
저소득층	402~771	198~279	361~366

※ 저소득층이란 종합소득금액이 2,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,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함

※ 장치 제작사와 계약 체결시 지원금액의 약 5~10% 정도 자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며, 행정사항과는 무관함

- 조기폐차에 최대 700만원 지원

-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%(저소득층은 90%)를 지원

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

구 분		상한액(만원)
총중량 3.5톤 미만		150
총중량 3.5톤 이상	배기량 6,000cc 이하	400
	배기량 6,000cc 초과	700

○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

- 저감장치(DPF, p-DPF) 부착 차량

-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,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, 서울시 혼잡통행료 50% 감면

※ 검사 면제는 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며,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 부착차량에 한함

- LPG 엔진 개조 차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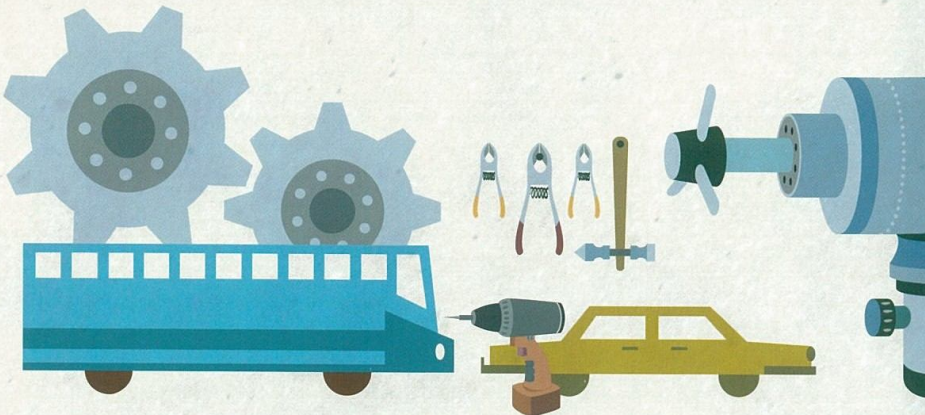
-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, 환경개선부담금 영구 면제, 서울시 혼잡통행료 50% 감면

※ 검사 면제는 엔진개조 후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며,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 부착차량에 한함

04 저감사업 참여 시 의무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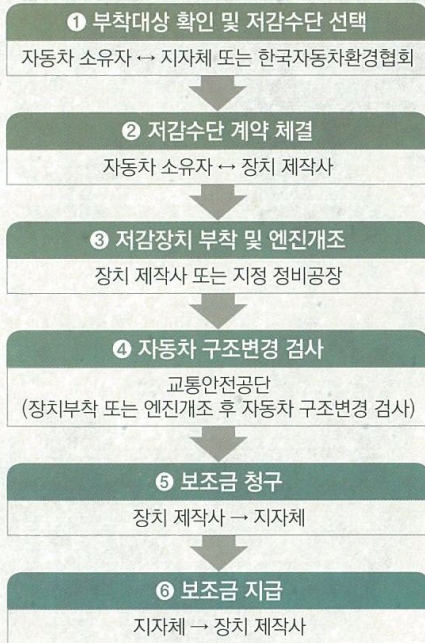
○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 차량 준수사항

- 의무운행기간(2년) 준수
 -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(20~70%)
- 자동차 등록 말소시 저감장치 또는 LPG 엔진 장치는 반드시 반납
- 장치 무단 제거 및 임의 변경 불가
 - 차량소유주가 장치를 무단 제거 및 임의변경할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
- 연비 및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 차량 정비 · 장치 점검
 - 저감장치 중 DPF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(보정기간 내 · 외 클리닝 비용 지원)
 -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(OBD) 경고음 발생 시 제작사에 A/S 신청
 - LPG 엔진개조차량은 개조 후 3,000km 또는 3~6개월 이내에 무상점검 실시(무상점검비용 1회 지원)
 - ※ 차량의 급제동, 급가속 시에는 인증 연비보다 저하될 수 있음



05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방법 및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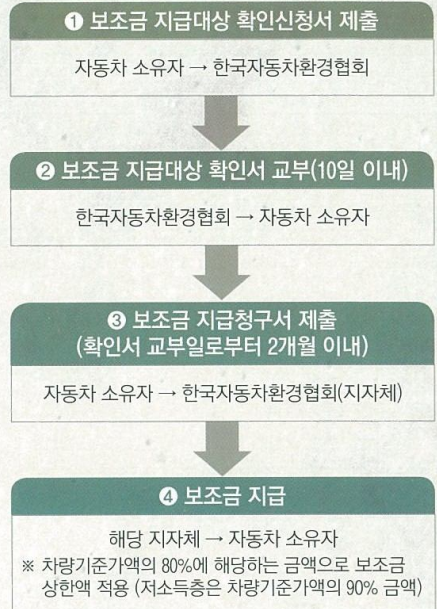
○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



제출 서류

- ① 보조금지급청구서
-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·교체 확인서
- ③ 유지관리비용 청구서
- ④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·개조 증명서
- ⑤ 사후관리이행 약정서(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)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권(서울보증보험 발행)
- ⑥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(저소득층일 경우)

○ 조기폐차



제출 서류

-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시
 - ① 자동차등록증 사본
 - ②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와 증빙 서류
 - ③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
- 보조금 지급 청구 시
 - ① 자동차 말소 등록증(원본 또는 사본)
 - ②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
 -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

※ 배출가스 저감장치 특성, 부착·개조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(02-3473-1221)